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416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구합6862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별세 97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C설립"을 "C"으로, 9행의 "E으로부터"를 "위 E의"로, 10행의 "를 이전받았다"를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로, 15행의 "2017. 6. 28."을 "2017. 7. 10."로, 18행의 "2,645,980원"을 "2,953,020원"으로, "107,400원"을 "126,120원"으로, 20행의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로 각 변경하고, 제3면 10행부터 제4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5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18행의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24행의 "법인의 재산"을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3, 14호증의 각 1, 2, 3,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 12. 30.자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추가 부분

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B의 직원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5.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따라서 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2. 30.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